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775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재판경과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775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6나2180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 상고인 1. F

2. G

3. H

4. 김해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6나21804 판결

판결선고 2008. 9.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F가 부친인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점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참조), 위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전환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8165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 F가 그의 모친 및 원고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상 설사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농사를 지으며 단독으로 이를 점유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피고는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위 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